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목 차>

1.검정대행기관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 및 세부기준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상청	작 성 자	이름	이현정
	담당부서 (과)	계측표준협력과		직급	기상주사
	국장	연혁진		연락처	042-481-7358
	과장	신언성		이메일	hjlee@mail.go.kr

2024. 07. 16. 작성

관 측 기 반 국 장

연 혁 진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검정대행기관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 및 세부기준 신설								
	2.규제조문	제12조제1항, 별표6								
	3.위임법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5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8.12~2024.09.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상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7.규제내용	○ 검정대행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업무정지, 지정취소)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검정대행기관</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검정대행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검정대행기관									
9.규제목표	○ 위반행위의 종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비례적으로 설정하여 처분의 합리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법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서 검정대행기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분 기간을 비례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행정 부담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현행	개정안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1) 법 제13조에 따른 검정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 업무를 대행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지정 취소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지정 취소		
3)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지정 취소	
4) 법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지정 취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측기 검정 제도를 운영중이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검정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상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횟수 등 구체적 상황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이 없음
- 이에, 검정대행기관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 위해 현행 규정 보완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24.2.6. 개정, '25.2.7. 시행)에 따라 법 제15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검정대행기관 위반행위별 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규제이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별표 3의5)'을 준용하였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 추후 입법예고 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3. 규제목표

- 위반행위의 종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비례적으로 설정하여 처분의 합리성 제고
- 기상측기 검정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여 관측자료 신뢰성·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기상측기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기상청장의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유사입법 사례와 같이 타부처에서도 운영중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5호	시정권고	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7(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1호	지정취소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2호	지정취소		
3)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3호	지정취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5호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3개월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6호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3개월	효력정지 6개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운전적성검사업무 또는 관제적성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15조의2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법 제15조제5항 또는 제21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5조의2 제1항제3호	경고 또는 보완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 또는 관제적성검사업무를 거부한 경우	법 제15조의2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 또는 관제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5조의2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의2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분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9조의2 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2 제4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19조의2 제4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행정 부담 없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예산 및 재정 투입 없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정확한 기상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기상측기 검정업무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하므로, 검정대행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규제는 필요함
- 검정대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 적정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규제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됨